2023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3년 7월 27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신 성 환 위 원

박 춘 섭 위 원

장 용 성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이 한 녕 금융결제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조 태 형 경제연구원 부원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1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의안 제32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현행 자금 조정대출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에 확대한 한국은행 대출 적 격담보증권을 상시화하고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당행의 대기성 여신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자금조정대출 금리와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초단기금리의 상·하단으로서 대칭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예금 금리를 인상하고자「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6월 14일, 20일, 7월 14일, 19일 등 네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미국 SVB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특히,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주요국에비해 좁게 설정되어 있으며,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긴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원들은 은행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한국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구체적으로동 대출의 적용금리를 현행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를 기존 적격담보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 번에 최대 1개월 범위 내로 설정할 수 있었던 대출만기도 3개월까지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음. 그리고 이번에 확대된 적격담보를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적용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또한 위원들은 향후 금융시스템내 유동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요국과 같이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의 적격담보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법적·실무적 이슈 검토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 여부를검토하기에 앞서,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입수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현행「한국은행법」상 은행과 같이 상시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필요시「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각 기관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는데 동의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정보공유가 보다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국은행 간 수시 정보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의안 제31호-「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32호-「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개정(안)(생략)

<의안 제33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호와 제81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취득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조치를 상시화하고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한 위원협의회 논의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앞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